

■ **2026년도** CNK실버빌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】

1. 계약의 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CNK실버빌은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

-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. 단, 계약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.
 - ② 기관과 계약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.
 -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
- 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- CNK실버빌 급여 비용

【 CNK 실버빌 급여 비용 】

※ 등급외 입소자는 기관 자율 수가 적용 (시설 : 2026. 1. 1. 시행. 30일 / 31일 기준)
 【25년수가 1등급 90,450 원 ,2등급 83,910 원 ,3,4,5등급 79,240원】

1. 【 요양보호사 비율 2.1 :1 적용 ,급여 항목 등급별 수가비용 7.37% 인상 】

구 분	1 일 수 가	일수	총 급 여 비 용	본인부담	공단부담	본인부담	공단부담	본인부담	공단부담
				08% 금액	92% 금액	12% 금액	88% 금액	20% 금액	80% 금액
1등급	93,070	30	2,792,100	223,360	2,568,740	335,050	2,457,050	558,420	2,233,680
2등급	86,340	30	2,590,200	207,210	2,382,990	310,820	2,279,380	518,040	2,072,160
3,4,5 등 급	81,540	30	2,446,200	195,690	2,250,510	293,540	2,152,660	489,240	1,956,960
구 분	1 일 수 가	일수	총 급 여 비 용	본인부담	공단부담	본인부담	공단부담	본인부담	공단부담
				08% 금액	92% 금액	12% 금액	88% 금액	20% 금액	80% 금액
1등급	93,070	31	2,885,170	230,810	2,654,360	346,220	2,538,950	577,030	2,308,140
2등급	86,340	31	2,676,540	214,120	2,462,420	321,180	2,355,360	535,300	2,141,240
3,4,5 등 급	81,540	31	2,527,740	202,210	2,325,530	303,320	2,224,420	505,540	2,022,200

2. 【비급여 항목 및 비용 -(등급외자 동일적용) 2025년 대비 1식 500원 인상】

서비스 항목	내 용	30일	31일
식재료비	4,500원/1식	405,000	418,500
간 식 비	1,000원/1일	30,000	31,000
계약의사 본인부담금	초진비용 X 본인부담률 + 재진비용 X 본인부담률 (입소 처음달) 재진비용 X 본인부담률 + 재진비용 X 본인부담률 (입소 다음달 이후)		
병원치료비	진료 및 약제	본인부담	
병원물리치료		CNK 실버빌 부담	
병원운임		무료, 시외(본인부담)	
이 · 미 용 비	월1회	무료	

4. 계약자의 의무

계약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'보호자'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하며 계약 대상자가 지정한보호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① '계약대상자' 의 의무

- 1) 월 이용료 납부
- 2)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- 3) 기관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- 4)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5)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'기관' 의 의무

- 1) 계약대상자의 건강관리 협조
- 2) 계약대상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
- 3)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4)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5) 기타 계약대상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'보호자(신원인수인)' 의 의무

- 1) 계약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2) 계약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3)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4) 계약대상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
- 5)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5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① 계약대상자의 해지

- 1) 계약대상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을'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기관의 해지

- 1) 계약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2)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3) 계약대상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기관은 계약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계약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6. 제반사항의 준수

- ① 보호자는 기관에게 비급여 계약 외의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를 추가 계약 없이 요구하지 않는다.

- ② 계약대상자는 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기관이 정한 시간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.

- ③ 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대상자의 외출에 의한 실종 및 사고, 보호자의 음식물 반입에 의한 사고, 계약대상자의 노환이나 스스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- ④ 계약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에 가한 손해 및 망실, 기관의 직원과 소유재산에 가한 손해 및 망실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 및 보호자가 이와 관련된 치료비용 등 부대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.

- ⑤ 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계약대상자의 신상에 관련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C N K 실 버 빌